

| | | |
|------------------|------|---|
| 의안 번호 | 1406 | 【2018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 계획안】 검 토 보 고 서 |
|------------------|------|---|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7. 11. 10.(금),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7. 11. 16.(목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7. 12. 5.(화)

2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2018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 계획안을 의회의 심의·의결 받고자 함

3. 주요내용

○ 조성 규모 (단위 : 천원)

| 2017년도 말 조 성 액 (가) | 2018년도 조성계획 | | | 2018년도 말 조 성 액 (마)=(가)+(라)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|
| | 수 입 (나) | 지 출 (다) | 증 감 (라)=(나)-(다) | | |
| 2,834,115 | 12,615 | 0 | 12,615 | 2,846,730 | |

○ 기금운용계획 (단위 : 천원)

| 수 입 계 획 | | | | 지 출 계 획 | |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계 | 예 치 회 수 | 이자수입 | 기 타 수 입 | 계 | 예 치 금 | 기 타 지 출 |
| 2,846,730 | 2,834,115 | 12,615 | 0 | 2,846,730 | 2,846,730 | 0 |

4. 근거법규

- 가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
- 나. 「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8조

5. 검토의견 : 없음

근거법규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- 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-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-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- 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)** ① 구청장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,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2.29.>
-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